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59
----------	-----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전병주 의원 (찬성 25명)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전병주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3. 6. 8. ~ 2023. 6. 12.(의견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가진 장애인 가족들에게 포괄적, 통합적 지원을 위해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되었음.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p>〈<u>신 설</u>〉</p>	<p><u>관한 사업</u> <u>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	--

2 주요 사항 검토

가. 지원사업(안 제4조의2 신설)

- 개정안에서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제1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제2호),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제3호),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제4호),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으로 나열되어 있음.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광역 1개소, 기초(자치구) 2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괄 - 종사자 역량강화 - 가족지원서비스 개발·보급 - 장애인 가족지원 - 홍보 및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사례관리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 가족중심사업(자조모임, 장애인부모 동료상담, 장애인가족 미래설계) - 가족권리옹호사업 -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 제30조의22)(장애인 가족지원)에 근거하여 장

1)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개요 〉

- 센터현황 : 총26개소 / 광역 1개소, 기초(자치구) 25개소
- 운영인력 : 광역 6명이상(센터장 1명, 직원5명), 기초 4명이상(센터장 1명, 직원3명)
- 지원내용 : 동료상담, 사례관리, 긴급돌봄, 가족역량 강화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23년예산 : 총 3,051,833천원

〈표1〉 2022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실적

〈〈 광역 〉〉

- 기초센터 운영지원,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단위:명, 회)

구분	기초센터 운영지원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장애인가족미래설계시범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자조모임	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	교육 및 회의	학습모임	단합대회
실현	152	225	14	14	22	436	13	106
향수	137	58	19	16	1	41	1	1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초 >>

○ 기본정보 제공·상담 및 돌봄서비스 등 맞춤 서비스 지원

(단위:명, 회)

구분	(A)긴급돌봄서비스				(B)상담 및 사례관리	(C) 솔루션	(D)가족역량강화			
	소계	일상	방학	내방변			소계	부모 형제 지원	휴식 지원	미래 설계
살원	1,427	687	634	106	7,332	42	2,761	5,841	1,994	177
횟수	6,221	2,500	3,316	405	10,399	17	1,342	1,571	215	54

- 따라서, 개정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 가족 지원)를 근거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17개 시·도 대부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 조항이 있으나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지원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조항 없는 시·도 : 서울시, 대구광역시

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신설)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자립지원과)는 기 추진중인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에 원안 동의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집행 부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명	주 소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얼빌딩 304호(당산동3가)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명	주 소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90, 5층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8층(용두동)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미주빌딩 4층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합정동)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마곡동로 3길 6, 마곡NY타워 4층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상원길 36, KTP빌딩 5층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1층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광평로60길 22, 4층(수서동, 미미위강남세움센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강남대로6길 66-18(양재동)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혜로 63길 43행정지원센터 B101호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시흥대로73길 30, 4층(시흥동)
동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505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OB101호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로구 안양천로 552(개봉2빛물펌프장 5층)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산구 백범로 329, 4층 (원효로1가, 보건분소)
강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동구 상일로12길95, 4층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종암로 129 청한상가 305호
영등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어울림센터 4층
관악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관악센츄리타워 4층 401호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동남로 28길 40, 4층
강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오현로 187-6 6층
종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삼청로91-1
노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원구 상계로 5길 32(금호프라자1층)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1층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행정복합타운 4층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17. 2. 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5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전병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형재, 남창진,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아이수루, 유정인,
, 유정희, 윤종복,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신 설></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